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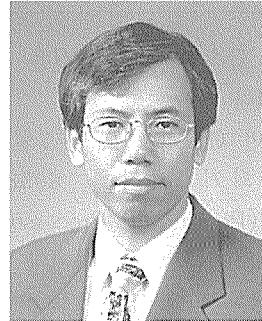
# 컴퓨터 CPU 관세소급 대응 활동보고

## 1. 개요

컴퓨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도정보화 사회와 지식기반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산업인 관계로 우리나라에는 물론 선진 각국과 경쟁국들까지 서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컴퓨터 산업은 기술개발력 부족으로 급속한 기술혁신에 대응이 늦고 원자재의 높은 관세율을 등으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데다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내수불황 등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도산하고 대기업들까지 사업 축소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컴퓨터 산업계는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를 내다보고 단기경영수지악화를 무릅쓰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 수출로 재기의 발판을 다져가고 있는 와중에 컴퓨터의 핵심부품(전체 가격의 35% 비중)인 CPU(중앙처리장치)를 세계적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인텔사가 새로운 버전(8086 → 80286 → 80386 → 80486 → 80586 프로 → 80586 펜티엄 II 프로세서)을 출하하면서 관세청에서는 동



이상근 부장(본회 정보통신산업부)

CPU의 외형이 기존의 CPU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당기간 품목 분류 결정을 못해오다가 최근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에 따라 동 CPU를 지금까지의 반도체항목(0%)에서 관세율이 높은(4%) 컴퓨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그동안 수입분에 대한 수정신고 요청을 해옴으로써 관세 추징을 하였다.

동 CPU를 컴퓨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그동안의 수입분에 높은 관세율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우리 컴퓨터 업계는 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수억원에서 120억원까지, 전체로는 약 37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컴퓨터산업계는 경영 악화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과 관련 부품기업들이 도산하고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뿐 아니라 판매부진, 외제수입의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컴퓨터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컴퓨터 업계는 1996년에 경영악화(410억원 적자)에다 사전에 소급 추징분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못해 보전이 곤란한 실정으로 기업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용산상가 등 전국에 걸쳐 산재된 약 1,500개 중소업체에 CPU를 공급하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는 관세추징시 도산이 속출하고 또 이로 인해 중소 컴퓨터 업체에 CPU공급 중단 등의 사태가 초래됨으로써 PC산업이 붕괴될 우려마저 있다.

우리 업계의 견해로는 필요에 따라 품목분류를 수정할 경우 그 세율은 변경함이 없이 재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며 만일 세율을 변경 한다해도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CPU의 경우 미국의 인텔사가 전세계에 독점공급을 하고 있어 그에 대한 관세부과는 컴퓨터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소비자 부담증가로 컴퓨터 보급 이용 등 정보화 축진에 저해가 되므로 그의 관세를 0% 세율로 개정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수차 건의해온바 있는데 이

는 CPU 세율과 관련 미국, 일본 등은 이미 관세율이 모두 0%로 적용되어 그 영향이 전혀 없으며, 유럽의 각국과 대만은 품목분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은 낮은 관세율(반도체 항목)을 적용, 추가로 소급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컴퓨터 산업의 중요성과 현재 우리나라 컴퓨터산업의 당면애로, 그리고 컴퓨터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외국의 처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CPU에 대한 관세소급추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회는 그동안 정부 관련기관인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재경경제부, 관세청, 국민회의, 감사원 등에 건의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본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대표들이 관계부처 인사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동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2. 문제의 발생 및 경과

문제의 CPU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로서 기능상 요소부품이며 가격면에서도 개당 250\$ ~ 400\$로 전체 자재비의 35%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동CPU는 미국의 인텔사가 전세계에 독점 공급중이며, 그동안 8086, 80286, 80386, 80486 등

〈인텔의 CPU개발 변화 추이〉

	'73~'95년	'97~'99년
모델명	8086, 80286, 80386, 80486, 펜티엄 프로	펜티엄 II, III
형태	Chip Type	Cartridge Type

으로 급속한 기술 혁신을 계속 해 왔다

금번 CPU는 '97년 7월부터 출하 되기 시작한 80586의 CPU(Pentium II Processor 명명)로, 이는 멀티미디어의 기능이 대폭 향상되면서 그 외형이 종전의 Chip형에서 Cartridge형으로 외형이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CPU는 국내시장 규모(98년)가 약 190만개로 향후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카트리지형 CPU의 수요증가 예상된다

서 수리하고 사후 실질심사과정을 통해 잘못된 경우, 제작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세차액을 추징토록 되어 있어 세관에서 동별 규정을 달리 적용할 방법이 없다.

## 입 계

관세율 표상 CPU를 HS8542로 규정한 이상 펜티엄II프로세서는 CPU의 하나의 모델 이므로 HS8542의 CPU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신고내용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소급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에 명문으로 CPU를 HS8542로 규정하였으므로 특정모델의 CPU에 대해서만 다른 품목으로 규정하려면 제43의 12에 의해 새로 품목 분류를 하거나, 최소한 관세법 제7의 2의 5항에 의거하여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즉 관세법상 CPU는 기능상의 문제로써 펜티엄II프로세서 CPU도 이를 충족 하므로 HS8542로 규정하는데 무리가 없는바 정부가 품목을 변경하려는 것은 WCO의 권고에 의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43의 12에 의한 새로운 품목 분류가 필요

## 3. 관세 소급에 대한 관세 당국과 우리업계의 쟁점사항

□ 현행 수입신고제도하에서 관세부과 제작기간(2년) 이내에 잘못된 신고 내용에 대해 차액 징수가 불가피(관세법 17조 및 25의2)

## 재 경 부

신고제도하에서는 수입신고를 하면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이상 수입신고 내용대로 세관에

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팬티엄II 프로세서 CPU에 대해 1997년 7월 최초 수입 신고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1999년 5월 17일이 되어서야 품목을 새롭게 지정한 것은 관세법 제 2조의 2 제1항 과세의 형평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법상의 기본원칙인 합목적성을 상실한 것이다.

아울러 과세당국이 스스로 품목지정을 할 수 없어 WCO의 결정에 의해 새로이 품목분류를 하였으므로 신고자에게 고의나 과실에 의한 잘못된 신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문제는 이 사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제척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소급과세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컴퓨터 주요 생산국도 팬티엄II프로세서 CPU에 대해 소급과세를 하지 않았다.

- 수입신고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납세관행(제2조의2)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

三 次 例

대법원 판례(83누149, 83. 12. 13.)는 관행성립기간을 7년 이상으로 하고 있어 본건의 1년 10

개월은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청에서 업계와의 회의를 통해 HS8473(컴퓨터 부분품)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고, 일부업체는 HS8473으로 신고한 바 있어 관행으로 인정하기가 고랸하다.

23

CPU 수입업체는 1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HS8542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장기간 납세관행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하다.

전술한 것처럼 CPU 수입업체  
는 관세율표에 정해진대로  
HS8542로 신고 하였고 펜티엄II  
프로세서 CPU에 대해서도 그러  
한 관행에 따라 신고 한 것이  
다

이러한 수입업체의 신고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품목을 변경하기 위해 법령개정을하거나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7조의 2의 항에 의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업계는 정부를 신뢰하여 완제품에 관세를 전가하지 않아 현재로써는 정부에 관세를 부담할 재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급과세를 한  
다면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상  
당수 도산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법상의 중요 원칙인 신뢰보  
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업계와의 회의를

통해 HS8473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불과 몇 개의 업체만 비공식으로 들은 바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이에 대해 전해들은 바가 없다.

또한 일부업체가 HS8473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관행으로 보기 고란하다고 주장하나

일부 업체란 200여개 업체 중  
불과 2개 업체에 불과하고 수입  
액도 극히 미미하므로 정부의 주  
장은 근거가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건은 CPU 수입업체가 관세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신고를 하였고 WCO의 권고에 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새로이 품목을 분류한 것으로써 기준의 잘못된 신고를 수정하여 과세하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WCO에 의해 품목을 새롭게 변경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품목인 HS8542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관세법 제2조의 2 제1항 과세의 형평에 따른 합목적성이 해설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컴퓨터업계와 관세당국간에 의견차이와 법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로 CPU관세 소급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본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관련관세법 조항

### 제2조의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①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에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제7조의2(품목분류의 사전예시 등)

- ⑤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때에는 당해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일부터 32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3조의12 (품목분류의 수정)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43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 분류를 할 수 있다.

### 제25조 2(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
  - 2) 제9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가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